



## 방염성능기준

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고시 제2022-29호, 2022. 12. 1., 타법개정.]

소방청(소방산업과), 044-205-7512

### 제3조(방염성능검사의 대상) 방염성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카펫 : 마루 또는 바닥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펫, 터프트카펫, 자수카펫, 니트카펫, 접착카펫, 니들펀치카펫 등을 말한다.
2. 커튼 :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.
3. 블라인드 : 햇빛을 가리기 위해 실내 창에 설치하는 천이나 목재 슬랫 등을 말한다.
  - 가. 포제 블라인드 : 합성수지 등을 주 원료로 하는 천을 말하며 버티칼, 롤 스크린 등을 포함한다.
  - 나. 목재 블라인드 : 목재를 주 원료로 하는 슬랫을 말한다.
4. 암막 :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.
5. 무대막 : 무대에 설치하는 천을 말하며 스크린을 포함한다.
6. 벽지류 : 두께가 2 mm 미만인 포지로서 벽,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비닐벽지 :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.
  - 나. 벽포지 :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하며 부직포로 제조된 벽지를 포함한다.
  - 다. 인테리어필름 :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를 말한다.
  - 라. 천연재료벽지 : 천연재료(펄프, 식물등)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.
7. 합판 :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, 중밀도섬유판(MDF), 목재판넬(HDF), 파티클보드(PB)를 포함한다.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.4 mm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.
8. 목재 :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.
9. 섬유판 :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.
10. 합성수지판 :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을 말하며 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.
11. 합성수지 시트 :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를 말한다.
12. 소파·의자 :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을 말한다.
13. 기타물품 :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로서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말한다.

**부칙** <제2022-29호, 2022. 12. 1.>

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